

제243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임실군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합니다.

2014. 11. 12.

임실군의회의회장

1. 개정취지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2013. 3. 23. 시행)에 따라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보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1) 적용의 완화 기준 보완 및 신설(안 제12조)
- 2)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조항 보완 및 신설(안 제13조)
- 3)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규모 확대(안 제16조)
- 4) 가설건축물 확대 보완 (안 제19조)
- 5) 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물중 사용승인 면제대상 보완(안 제20조)
- 6)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 기준 공표 신설(안 제21조제5항)
- 7) 건축물 안전 확보를 위한 다중이용업소 정기. 수시점검 규모 마련(안 제22조)
- 8) 대지안의 조경설치 기준 보완(안 제24조제3항제2호)
- 9) 도시지역에서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완화 건축물규모 신설(안 제25조의2)
- 10) 공업지역내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보완(안 제26조)
- 11)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보완(안 제27조 별표3)
- 12) 맞벽건축물 설치지역 보완(안 제28조제1항)
- 13)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 보완(안 제30조제2항제3호,제3항,제4항,제5항)
- 14) 공개공지 확보 및 설치 기준 보완(안 제3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 제5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27조, 제35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54조, 제57조, 제58조, 제59조
- 건축법 시행령 : 제6조, 제6조의2, 제14조, 제15조, 제20조, 제23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80조, 제80조의2, 제81조, 제86조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2014.10.30심의결과 원안가결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이상 없음

마. 협의등 : 임실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바. 입법예고결과 : 2014. 09.24 ~ 2014. 10. 15(20일 이상) 의견없음

사. 임실군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결과 : 2014.11.06 원안가결

아. 기 타 :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을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으로 한다.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 농·축·임·수산업용 창고, 단독주택(다가구, 다중주택은 제외) 등으로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규모로 한다.
- ⑤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제56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완화기준 적용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로 한다.
-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지역의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 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의한 완화기준을 따른다.

제13조제3호 각호 이외부분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대지 안에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안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이외부분 가목 및 나목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5호, 제6호,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 계단, 승강기의 설치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27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15조제3항 중 “그 밖에”를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5천제곱미터”를 “1천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 농·축·수산업 및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위 천막 및 합성수지 재질 등을 이용한 지붕구조로 된 창고 및 작업장
- 5. 조립식구조로 된 33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냉동창고 및 야외흡연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정에”를 각각 “단서 규정에 따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건축물중”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출 수 있는 건축물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제2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항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수수료 기준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년1회 군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건축물의 유지·관리)”를“(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제2항 본문 중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을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25조 본문중 “법 제45조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6조제3호 중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를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로 한다.

제3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제30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가 상업지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배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상으로”를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7조의2제3항”을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설치할 것”을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제3호는 삭제하며, “제4호”를 “제2호”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신고를 받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1조제3항 관련)

연 면 적 합 계	건축허가 (용도변경포함) 현장조사대행 소요시간	(임시)사용승인시 검사대행 소요시간
건축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주거 용인 경우 661제곱미터 이하)	2시간	4시간
495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2.5시간	5시간
1,000 제곱미터 이상 3,000 제곱미터 미만	3시간	6시간
3,000 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	3.5시간	7시간
5,000 제곱미터 이상	4시간	8시간

- 비고) 1.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하는 부분의 면적에 따라 적용한다.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검사대행 소요시간에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의거 당해장관이 공고하는 당해연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기술사”의 시간당 노임단가(1일 8시간)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천원미만 버림)
3. 동별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일 경우 수수료는 사용승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별표 3] (개정)

대지 안의 공지 기준(제27조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 (여관 및 여인숙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1미터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공동주택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 (단 한옥의 경우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 파 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신 설>

<신 설>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①·② (생략)
-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

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4. (생략)
- ② (생략)

제19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

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략)
- 3.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거실이 아닌 경우로서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의 거리가 제27조에 따른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한 범위에서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

제16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

금 등) ① -----

----- 1천제곱미터 -----

- 1. ~ 4.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가설건축물) ①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② -----

을 말한다.

1. (생략)

2. 천막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창고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단, 공장부지내에 설치하는 천막구조로 된 창고는 면적제한 없음)

3.·4. (생략)

<신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허가권자가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건축물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략)

3. 연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④ (생략)

<신설>

제2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층수가 10층 이상 이거나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말한

-----.

1. (현행과 같음)

2. 농·축·수산업 및 공장을 영위하기 위한 1층 이하로서 목재, 철파이프위 천막 및 합성수지 재질 등을 이용한 지붕구조로 된 창고 및 작업장

3.·4. (현행과 같음)

5. 조립식구조로 된 33제곱미터 이하 농업용 냉동창고 및 야외 흡연실

제20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단서 규정에 따라 -----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물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제3항에 의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수수료 기준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년1회 군 홈페이지에 공표 할 수 있다.

제22조(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다. 다만,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② (생략)

제23조(건축지도원) ① (생략)

②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군수의 명령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100분의50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인 건축지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략)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 및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포함한다)

2. 10.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생략)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

에 따른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건축지도원) ① (현행과 같음)

② -----

-----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 -
-, -----
-----.

③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10. (현행과 같음)

③ -----

-----.

1. (현행과 같음)

<삭제>

미터 미만인 부분에 대하여는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생략)

제25조(도로의 지정)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5.(생략)

<신 설>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규모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4.·5. (생략)

제28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8미터 이상 도로에

2. -----

----- 국토교통부장관 -----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도로의 지정)법 제45조제1항제2호 -----

1.-5.(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 한다.

제26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

-----.

1.·2. (현행과 같음)

3. ----- 150제곱미터

4.·5. (현행과 같음)

제28조(맞벽건축) ① -----

-----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지정하

접한 대지를 말한다.

② (생략)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생략)

② 법 제61조제4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 (생략)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는 구역으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광장, 하천, 철도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③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대지가 상업지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을 배치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영 제86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를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등이 있는 벽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2. (생략)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그 면

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중 남쪽방향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 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현행과 같음)

② -----

----- 이하로 --.

1.·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
-----.

1. -----
-----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삭제>

<삭제>

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의 2분의1 이하로서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4.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군수가 일반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④·⑤ (생략)

2. -----

④·⑤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1조제3항 관련)			[별표 2]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제21조제3항 관련)		
연면적합계	건축허가 (용도변경포함) 현장조사대행 소요시간	(임시)사 용승인시 검사대행 소요시간	연면적합계	건축허가 (용도변경포함) 현장조사대행 소요시간	(임시)사 용승인시 검사대행 소요시간
건축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주거 용인 경우 661제곱미터 이하)	(생략)	(생략)	건축하고자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주거 용인 경우 661제곱미터 이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95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생략)	(생략)	495제곱미터 초과 1,000제곱미터 미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000 제곱미터 이상 3,000 제곱미터 미만	(생략)	(생략)	1,000 제곱미터 이상 3,000 제곱미터 미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000 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	(생략)	(생략)	3,000 제곱미터 이상 5,000 제곱미터 미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5,000 제곱미터 이상	(생략)	(생략)	5,000 제곱미터 이상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비고) 1. (생략) 2. ----- - <u>지식경제부장관</u> ----- ----- ----- ----- 3. (생략)			비고) 1. (현행과 같음) 2. ----- - <u>당해장관</u> ----- ----- ----- ----- 3.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제27조 관련)	
1. 공장, 창고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500제곱미터 미만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창고	전 지역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 창고를 제외한다)	1미터 이상	3미터 이상(다만,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	건축선
		1미터 이상	1.5미터 이상(다만,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1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2. 판매시설 등

대상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전지역	1.5미터 이상	3미터 이상	건축선
		1.5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상업지역 제외)

3. 공동주택

대상 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전지역	3미터 이상	2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건축선
		3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1.5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상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4.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대상 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전지역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다만,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건축선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다만,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5. 위락시설 등

대상 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500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2천제곱미터 이상	
위락시설, 휴게시설, 관공계시설	전지역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건축선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상업지역 제외)

6. 운동시설 등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를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5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3미터 이상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3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 아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그 밖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1미터 이상(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1미터 이상, 외벽선 1.5미터 이상)

대상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	2천제곱미터 이상	
운동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업무시설	전지역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건축선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상업지역 제외)

7. 자동차관련시설 등

대상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천제곱미터 이상	
자동차관련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묘지관련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방송통신시설	전지역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건축선
		2미터 이상	3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8.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상건축물	지역구분	띄어야 하는 거리	적용대상
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을 제외한다)	전지역	1미터 이상	건축선
		1미터 이상	인접대지 경계선

대상 건축물	띄어야 하는 거리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단 한옥의 경우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 준공업지역 : 1미터 이상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 1.5미터 이상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을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중 학교 및 학원,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위락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식장.	· 1.5미터 이상
마. 공동주택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 파트 : 3미터 이상 · 연립주택 : 2미터 이상 · 다세대주택 : 1미터 이상
바.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5가구 이하 제외)	· 1미터 이상 (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0.5미터 이상, 외벽선 1미터 이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자치법규명 :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비용발생요인

○ 없음

2. 미첨부 사유

○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정으로 건축조례에 반영토록 위임된 사항 반영을 위해 제1조 목적에 법령을 추가 하고, 동조례 제12조 적용의 완화규정, 동조례 제13조 기존건축물에 관한 특례조항 신설, 동조례 제16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예치대상 규모확대, 동조례 제19조 가설건축물 확대, 동조례 제20조 사용승인 면제대상 보완, 동조례 제2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 기준공표 신설, 동조례 제22조 다중이용업소 정기.수시점검 실시 규모 보완, 동조례 제24조 대지안의 조경설치 기준 보완, 동조례 제25조의2 대지와 도로의 관계 적용완화 건축물규모 신설, 동조례 제26조의 공업지역내 대지의 분할 최소면적 보완, 동조례 제27조 대지안의 공지확보 기준 보완, 동조례 제28조 맞벽건축물 설치 지역 보완, 동조례 제30조 일조확보를 위한 높이제한 기준신설 보완, 동조례 제31조 공개공지 확보 및 설치기준 등등을 상위법 기준으로 정비하여 규제완화 및 규제개혁 권고사항을 반영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안의 내용이 제한·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내용임

3. 작성자 :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노 동 근 (인)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

관리번호	2014A전북임실048		
정책명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전라북도 임실군	
	부서명	민원봉사과	
	담당자명	노동근	전화번호 063-640-2292
주요 분석평가 내용 (민원봉사과)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 (분석평가책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허가 등과 관련하여 여성편의시설 설치나 화장실 설치, 유해업소의 허가여부, 안전 관련 등의 문제는 여성들의 안전과 생활편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건축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4조 2항에 “다만, 위원 위촉시 타자치단체간 2개 시.군.구를 초과하거나 타위원회간 5개 이상 위원회에 중복 위촉.임명 되지 아니한 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의 경우 건축분야 전문가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여성들의 위원회 위촉 인력풀이 부족한 상황임. 따라서 타 자치단체 2개 시.군.구 초과 시 위촉제한을 할 경우 여성들의 참여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음. 타위원회 참여 제한도 경우에 따라 완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여성위원 위촉의 경우 위 조항이 있더라도 성별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아니면 이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큰 무리가 없다면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 <p>건축 관련 전문가들이 여성이 소수이기 때문에 위촉이 어려울 수도 있으나 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으로써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건축물 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역사회 생활속에서 직접 경험하는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2항 위촉 조건에서 3호를 추가하여 시민단체나 여성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p> <p>소위원회 또한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p>		
검토의견 반영 결과 (민원봉사과)	<p>금번 임실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실군 건축위원회구성 또는 소위원회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분석 의견과는 무관하며, 차후 임실군 건축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시 분석평가 의견을 적극 반영 하겠음.</p>		
<p>2014년 11월 03일</p> <p>민원봉사과장</p> <p>분석평가책임관 귀하</p>			

□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4.5.28.>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군계획시설 및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 4층 이상인 경우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제54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하여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안의 건축물과 대지 등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 할 수 없다.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제59조(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맞벽, 연결복도, 연결통로의 구조·크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1., 2014.4.29.>

4.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제3항에 따른 기준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 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②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5.31.>

3. 제1항제8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 제55조, 법 제56조,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4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할 것

5. 제1항제11호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전문개정 2008.10.29.]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전문개정 2008.10.29.]

제14조(용도변경) ① 삭제 <2006.5.8.>

⑥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제15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⑤ 법 제20조제2항에서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과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 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7.16., 2010.12.13., 2012.4.10., 2012.12.12., 2013.3.23.>

5.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9.9.>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 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유도로·계류장·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4.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11.20.>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전문개정 2008.10.29.]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떨어져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9.]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2.12.12.>

1. 상업지역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한다)로

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 사이에 도시·군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12.12.>

1. 삭제 <2012.12.1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할 것.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日照)를 확보 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별표 2] <개정 2013.5.31>

대지의 공지 기준 (제80조의2 관련)

1.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창고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공업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3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2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1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2.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대상 건축물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건축기준
가. 전용주거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준공업지역: 1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준공업지역 외의 지역: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다.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및 종교시설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라.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1.5미터 이상 6미터 이하
마. 공동주택(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아파트: 2미터 이상 6미터 이하 · 연립주택: 1.5미터 이상 5미터 이하 · 다세대주택: 0.5미터 이상 4미터 이하
바.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0.5미터 이상 6미터 이하(한옥의 경우에는 처마선 2미터 이하, 외벽선 1미터 이상 2미터 이하)

비고: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기준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는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정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

제11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대상 건축물 및 완화기준)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맞게 설계된 건축물
2. 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
3. 법 제17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은 건축물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
5.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골조공사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 건축자재를 100분의 15 이상 사용한 건축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정설치면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587호)

[별표 9]

녹색건축물 완화기준

1) 건축물에너지 효율인증 등급 및 녹색 건축 인증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녹색 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녹색 건축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에 따른 에너지효율인증등급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분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	에너지 효율인증 2등급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	12% 이하	8% 이하
녹색건축 인증 우수 등급	8% 이하	4% 이하

2)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비율

-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별도로 획득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건축기준 완화비율	3% 이하	2% 이하	1% 이하

3)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가 1)항과 2)항을 동시에 충족하는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기준 완화비율을 합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신청을 할 수 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3.11.2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휴게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나.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 목·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인 이상인 것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1)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는 학원

(2) 하나의 건축물에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학원

(3) 하나의 건축물에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부터 제7호의5까지 및 제8호의 다중이용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다중이용업과 학원이

함께 있는 경우

4. 목욕장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제6호의2·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7.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7의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7의5.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이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업